의 안 번 호

1386

[울신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9. 6.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9.(화)

2. 제안이유

"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"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국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외대출 자격 부여
 - 1) "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" 정의 신설(안 제2조제10호)
 - 2) "책이음 서비스 회원" 정의 신설(안 제2조제11호)
 - 3) "독서회원" ⇒ "자료대출 회원 또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" (안 제18조제2항제1호)
- 나.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반영
 - 1) 상위법령 준용 조문 삭제(안 제2조제9호)
 - 2) 위원해제 사유 중 "사망" 조문 삭제(안 제9조제2항제3호)
 - 3) 전염병 ⇒ 감염병(안 제15조제1항제1호)
 - 4) 변상책임 조문 삭제(안 제23조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제9조, 제14조, 제20조)
 - 1) 해촉 ⇒ 위촉 해제, 대출기한 이내에 ⇒ 대출기한까지
 - 2) 단체로부터 ⇒ 단체에서
- **4. 근거법규** : 「도서관법」제28조제5호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에 따라 회원에게 자료 를 관외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,
- O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 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